

<2026년도 1차>

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계획 공고

□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6년도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□ 내용 : 202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지원 공고

□ 지원기간 및 배정규모

1. 일반지원 대상 홈페이지 접수(선착순 마감시 종료)

차수	접수시작일	접수종료일	배정규모
1차(대환)	26-01-06 10:30~	자금마감 시까지	100억원

2. 특별지원 대상 상시 접수

- 아래의 대전시 소상공인 정책상품에 한하여 Track1-신규 상시 접수 가능

상품명	대상은행	지원규모
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	농협, 우리, 하나	23억원
상생배달앱(땡겨요)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	신한	21억원
비대면 취약계층(고령자)	협약은행 전체	50억원

□ 지원내용

1. Track 1 : 신규 보증부 대출

- 일반 신규 금번 차수 신청 불가 (26년 6월부터 시행 예정)
- 신규 보증부 대출 신청 희망 시, 「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」 신청

※ 특별지원 대상 (세부요건 별도 확인필요)

1. 「성실상환자 우대지원 협약보증」 지원대상자

- 공고일 이전 2년 이내 재단 보증 1건 이상이 전액 상환 해지된 업체
-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 및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체정보가 없는 경우

2. 「상생배달앱(땡겨요) 입점업체 지원 협약보증」 지원대상자

- 대전광역시 상생배달앱 「땡겨요」 입점 업체
- 「땡겨요」 앱을 통한 주문이력 3회 이상의 업체

3. 비대면 취약계층(고령자)

- 만 70세 이상으로 비대면 접수가 어려운 고객

2. Track 2 : 대환 (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본 자금으로 전환)

○ (지원방식) 기존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대환

○ (지원대상) 다음 사항 모두 충족

1.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의한 소상공인(개인 또는 법인사업자)으로 사업자등록증상 「사업개시년월일」이 지난 업체
2.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
 - 휴·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
 -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2026년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자금을 7,000만원 이상 대출실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
 - 금융·보험업,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(붙임 2)을 영위하는 소상공인

○ (대환대상)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

- ① 개인택시 특례보증
- ②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
- ③ 재도전지원 특례보증
- ④ 햅살론(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)
- ⑤ 2026년 1월 6일 이후 실행된 보증부대출
- ⑥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
- ⑦ 대전시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
- ⑧ 대전형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자금

※ 단 ⑥⑦⑧ 자금의 경우 접수일 현재 2개월 이내에 이차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신청 가능

3. 공통사항

- (이자지원)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

이자지원 증지 사유	1. 파산·부도·폐업·휴업·회생·연체, 법정관리가 발생한 경우 * 이자를 정상 납부하고 있는 휴·폐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예외 2. 대전광역시 외 타 시/도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
---------------	--

- (대출기간) 2년 거치 일시상환

- (지원금액)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(Track1,2 지원금액 합산 기준)

※ 대출은행 및 보증기관 심사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

- (대출은행) 대전시 내 13개 협약은행(KB국민, IBK기업, 농협은행, 부산, 새마을금고, 수협은행, 신한, 신협, 우리, 전북, 지역농축협, 카카오뱅크, 하나)

※ 단,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(법인사업자 불가)

- (대출금리) 대출은행별 협약금리 적용(최대 5년간 적용)

대출은행	협약금리 「기준금리 : CD91일물(동일한 내용의 기준금리 포함)」
신한, 하나, KB국민	기준금리 + 1.5%(부분보증인 경우 2.0%) 이내
우리, 전북	기준금리 + 1.5%(부분보증인 경우 2.2%) 이내
카카오뱅크	기준금리 + 1.6%(부분보증인 경우 2.0%) 이내
농협은행	기준금리 + 1.6%(부분보증인 경우 2.2%) 이내
새마을금고, 신협, 지역농축협	기준금리 + 1.7%(부분보증인 경우 2.3%) 이내
기업, 부산	기준금리 + 1.7%(부분보증인 경우 2.5%) 이내
수협	기준금리 + 1.5%(부분보증인 경우 2.5%) 이내

※ 대출은행 및 취급상품별 적용금리가 상이하므로 대출은행에 금리 확인 후 신청 必

- (지원심사) 최종 지원 여부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및 대출은행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

- (신용보증수수료) 연 1% 이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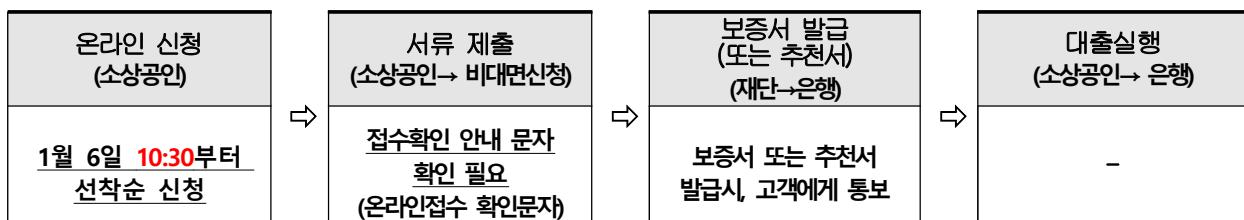
□ 신청방법

1.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sinbo.or.kr)를 통한 **온라인 신청** 후,
2. 당첨자 서류제출 : 비대면접수 원칙(비대면 취약계층에 한하여 대면접수 적용)

구분	제출 방법
비대면 접수	① 보증드림(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)APP ② 은행 APP
대면 접수	① 은행 방문 (대전광역시 내 영업점) ②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접수

※ 자세한 신청방법은 [붙임4]와 보증드림 이용 매뉴얼, 은행별 매뉴얼 확인 필요

□ 지원절차



□ 기타 및 유의사항

- Track2 대환 신청 시,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발생여부 은행 문의 필요
- 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
- Track1 및 Track2 중복신청 가능(단, 총 지원금액은 7,000만원 이내)

2026년 1월 6일

대전신용보증재단 이사장

- 붙임 1. 제출 서류 1부.
2.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.
 3. 상시 근로자수 확인서류 제출방법 1부.
 4. 온라인 신청 매뉴얼 1부. 끝.

[불임 1] 제출 서류

※ 하단 제출서류는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목록이며, 보증상담 이후 심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※ 하단 서류 외 금융기관(은행)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,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

대상	순서	제출 서류	유의사항	유효 기간
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	1	- 대표자 신분증 사본	- 앞면	-
	2	- 사업자등록증명	-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,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(사업장 주소 변경, 대표자 변경 등)이 있을 경우,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요	1개월
	3	- 아래 중 하나 (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)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현황)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	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,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. 그 외는 제출 불필요 -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(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) - 상세사항은 <별첨 1> 참고 -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 :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	1개월
	4	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	- 본인 및 가족(관계증명 가능시) 소유시 미제출 - 무상인 경우 "무상 임대차계약서" 등 제 출	-
	5	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	-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 주지기준으로 제출	
법인사업자	6	-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	-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	1개월
	7	- 법인인감증명서	- 등기소에서 발급 (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 - 약정서에 인감 날인	3개월
	8	-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	- 법인 "원본대조필" 날인	-
	9	- 주주명부 사본	- 법인 "원본대조필" 날인	-
	10	- 재무제표	- 최근 3개년도	1개월

[붙임 2] 소상공인지원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 다만, 『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』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(업)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통주점업
56212	무도유통주점업
5821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단,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- 부동산관리업(6821) -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 - 비주거용건물임대업(68112) 중 공유오피스,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
표준산업분류	업 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흉신소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 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/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

*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☞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* 기타 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
<붙임 3> 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

1. 상시근로자 여부에 따른 제출서류

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없음

* 단, 공공마이데이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 활용에 동의할 경우에 한함

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중 택 1 제출(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)

서 류 명	발 급 처
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· 국세청(홈택스) (www.hometax.go.kr)
·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	
·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(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)	·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his.or.kr)
·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	·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(www.total.kcomwel.or.kr)
· 소상공인확인서	·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://sminfo.smba.go.kr)

2. 상시 근로자 수 확인서류 제출방법

-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1월 이전인 기업

서 류 명	발 급 처
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
·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	
·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(또는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)	· 직전년도 1월~12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(총 12부) * 반기신고기업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부 *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의 경우 1부
·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	
· 소상공인확인서	· 발급서류 제출(1부)

- 개업일자가 직전년도 2월 이후인 기업

서 류 명	발 급 처
·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
·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	· 최근 12개월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·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	* 업력이 1년 미만은 경우 개업월 ~ 현재월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
·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	
· 소상공인확인서	· 발급서류 제출(1부)

<불임 4> 온라인 신청 매뉴얼

1.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sinbo.or.kr) 접속, 소상공인 초기금리 특별자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



2. 개인정보 수집, 이용동의, 사업자 구분, 취급 구분, 자금 구분 선택 및 유의사항 확인

① 대전광역시 경제자금 신청

② STEP 0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III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I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대전광역시 정책자금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·유지·관리, SMS 계약(자금 신청 결과 안내, 대출 신청 방법 안내 등)을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, 이용하고 있습니다.

II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- [필수정보]
가. 개인소개정보 : 이름,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, 휴대전화번호
나. 사업자정보 : 상호, 사업자번호, 사업장 소재 지자구, 법인등록번호
다. 금융거래정보 : 상품종류, 거래조건(이자율, 만기, 담보 등), 거래일시,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정보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(신청 불가)

③ STEP 02. 사업자 구분 선택

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
④ STEP 03. 취급 구분

대환(Track 2) 대출

⑤ STEP 04. 자금 구분

대전형 소상공인 초기금리 특별자금

⑥ STEP 05. 대전광역시 경제자금 신청 유의사항 (반드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.)

• 본 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대출(보증) 등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은 금융기관, 개인, 비대면 방식(보증드림, 온행인)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. (금융기관으로 내방 꼭요)
※ 대출 가능 금융기관 대전시 외 소재 영업점은 불가 : 국민, 기업, 농협(단위농 할 계외), 신한, 우리, 하나, 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전북, 부산, 카카오뱅크

• 본 자금 대상으로는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금액 등은 보증·소상공인(사업자)를 통해 대출(대출)이나 대출(대출)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.
※ 연체·세금체납·권리침해·압류·가압류·가처분·경매신청 등이 있는 경우 보증금이나 거래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.
※ 개인으로서 대출 이용한 경우 보증서(대전신용보증재단, 신용보증기금, 기금보증기금) 대출(대출)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이 불가합니다.

• 사업자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
※ 공동사업자는 해당 자금의 주체로자가 될 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
•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• 신청자기 자금 접수 시각일 현재 미처보전기간이 끝나지 않은 대전광역시 경제자금을 이용 중인 경우, 지원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• 자금 공고문 확인후 신청 해주세요. <공고문 열람>

(일괄동의) 유의사항을 충분하게 확인 하였습니다.

3. 실명 인증 (휴대폰 인증) * 대표자 직접 인증

▣ 경영개선자금신청

실명인증기관 실명확인

대전신용보증재단은 휴대폰 인증으로 개인확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에 [실명확인 버튼을 클릭](#)하면 실명확인이 새창에서 열립니다.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[실명인증기관에 본인확인용](#)으로만 사용됩니다.

실명확인 →
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37조(벌칙) 제9호 (시행일 2006.09.24)

4. 소상공인 초기금리 특별자금 신청 (사업자번호, 상호명, 사업장소재 자치구 기입)

전화번호 *	010 5069
대표자 주민번호 (앞 7자리) *	860402 1 ****
사업자번호 *	숫자만 입력해주세요
상호명 *	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을 입력해주세요
대표자명 *	배
사업장소재지 *	[자치구 선택] ▾

<전화번호, 주민번호, 대표자명>
휴대폰 인증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기입

제출하기

5. 신청 확인(접수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) * 접수번호 SMS로 자동 발송

▣ 대전광역시 정책자금 신청

○ 접수완료안내

대전광역시 정책자금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
발송된 문자 메시지내 접수번호 조회 url 확인 후, 협약 서류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6. 제출서류 확인

❶ 제출서류

※ 하단 제출서류는 [공공마이데이터](#) 및 [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](#)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할 간소화된 서류 모를이며, 보증상당 이후 심사에 따라 [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](#)

※ 하단 서류 외 [금융기관\(은행\)](#)에서 필요한 별도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거래은행에 확인 후 신청 필요

대상	순서	제출 서류	유의사항	유효기간
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	1	- 대표자 신분증 사본	- 일연	-
	2	- 사업자등록증명	-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하나,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 사업자 정보 변동(사업장 주소 변경, 대표자 변경 등)이 있을 경우, 변동내용이 반영된 최근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필요	1개월
	3	- 아래 중 하나 (상시근로자 수 확인서류)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(현황) ③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신출내역 ④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부과내역 ⑤ 그 외 4대보험 중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서류 ⑥ 소상공인확인서 ⑦ 당해연도 발급한 소상공인 대리대출 확인서	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이며, 직장명이 신청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 한함. 그 외는 제출 불필요 - 직전연도에 대한 1년치 자료 필요(영업기간 1년 미만 시에는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자료 필요) - 상세사항은 〈별첨 1〉 참고 - 소상공인 유예기간 인정: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시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 지위 부여	1개월
	4	-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	- 본인 및 가족(관계증명 가능시) 소유시 미제출	-
	5	-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	- 무상인 경우 "무상 임대차계약서" 등 제출 - 실제거주지와 등본이 다를 경우 실제거주지기준으로 제출	-
	6	- 법인등기사황전부증명서	- 말소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번호 표시	1개월
	7	- 법인인감증명서	- 등기소에서 발급 (검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 - 악정서에 인감 날인	3개월
	8	-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	- 법인 "원본대조필" 날인	-
	9	- 주주명부 사본	- 법인 "원본대조필" 날인	-
	10	- 재무제표	- 최근 3개년도	1개월

(참고) 신청조회하기 (접수번호 확인 가능)



신청하기

신청조회하기

❷ 신청조회하기

◎ 접수번호: 2501-9999

대전광역시 정책자금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.
하단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 신청 바랍니다.